

(2015. 11. 29. 반올림 보도자료 첨부)

<‘반도체 직업병’ 문제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>

	삼성전자		SK하이닉스 ¹⁾
	조정권고안	삼성전자의 입장 ²⁾	
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7년 황유미 님(삼성반도체, 백혈병)의 사망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사회화 - (반올림 파악) 2015. 9. 까지 총 221명의 직업병 피해제보 있었고, 그 중 75명은 사망. 8명은 직업병 인정 받음 - 2012. 11. 삼성이 반올림 측에 대화 제안. - 약 1년간의 실무협상 끝에 교섭 의제(사과/보상/재발방지대책)를 정하고, 2013. 12. 부터 ‘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’ 시작. - 2014. 5. 권오현 대표의 공개사과(“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한다. 중재안이 나오면 따르겠다”) - 2014. 9. 삼성과 가대위³⁾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절차 강행. 반올림은 ‘직접 협상’을 요구하며 반대하다, 2014. 12. 조정 절차 수용 - 2015. 7.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발표. 발표 직후 삼성과 가대위는 조정 ‘보류’ 요청 - 2015. 9. 삼성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보상절차를 강행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반올림 파악) 현재까지 총 5명의 직업병 피해제보가 있었고, 그 중 1명 사망. 1명은 직업병 인정 받음. - 2014. 7. 한겨레 신문이 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문제 심층 보도⁴⁾ - 2014. 8. 박성욱 대표이사 주도 하에 ‘산업보건검증위원회’ 발족. 위원회는 7인의 외부인사⁵⁾와 노사 각 2인으로 구성. 외부인사 구성에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음 - 2015. 11.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회사가 수용 	
보상 및 예방대책 사업의 주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삼성전자와 구성·운영 면에서 독립된 사회적 기구(공익법인)를 설립하여, 보상과 예방대책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다. - 기구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을 삼성전자가 기부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0억원을 ‘사내’ 기금으로 조성하여, 보상과 예방 및 연구 활동에 쓰겠다. - 보상에 대한 기준마련·심사·집행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보상위원회가 맡는다. * ‘2015. 8. 3. 삼성전자 보도자료’ 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제안한 ‘보상지원 방안’ 및 ‘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’을 회사가 수용

		삼성전자		SK하이닉스 ¹⁾
		조정권고안	삼성전자의 입장 ²⁾	
보상	대상 질병	(1·2군 질환) - 백혈병, 림프종, 다발성골수종 등 조혈기계 암 - 뇌종양, 유방암 - <u>유산·불임</u> (3군 질환) - 난소암, 종격동암, 피부T세포림프종, 흑색종, 눈의 종양, 두경부 종양 - 희귀질환(다발성경화증, 전신경화증, 근위축성 측삭경화증, 베게너 육아종증, 전신성 홍반루프스, 쇼그렌증후군, 파킨스병, 특발성 폐섬유화증, 모야모야병, 스틸병, 특발성 혈소판감소증) - 2세질환(선천성 기형, 소아암)	(1·2군 질환) - 백혈병, 림프종, 다발성골수종 등 조혈기계 암 - 뇌종양, 유방암 (3군 질환) - 난소암, 종격동암, 피부T세포림프종, 흑색종, 눈의 종양, 두경부 종양 - 희귀질환(다발성경화증, 전신경화증, 근위축성 측삭경화증, 베게너 육아종증, 전신성 홍반루프스, 쇼그렌증후군, 파킨스병, 특발성 폐섬유화증, 모야모야병, 스틸병, 특발성 혈소판감소증) - 2세질환(선천성 기형, 소아암)	(보상지원 질환) - 백혈병, 림프종, 다발성골수종 등 조혈기계 암 - 뇌종양, 유방암, 갑상선암, 위암, 전립선암, 직장암, 흑색종, 췌장암, 난소암, <u>폐암 및 호흡기계 암</u> - 유산 (복지지원 질환) - 희귀질환(다발성경화증, 전신경화증, 근위축성 측삭경화증, 다발혈관염, 육아종증, 전신성 홍반루프스, 쇼그렌증후군, 파킨스병, 특발성 폐섬유증) - 불임 - 2세 질환(소아암, 선천성 심장기형, <u>125개 희귀난치성 질환</u>)
	업무 이력	소속 불문(즉 협력업체 소속 포함) - 2011. 1. 1. 이전 입사자. - 1년 이상, 반도체·LCD 생산공정, 생산설비 관련 업무 담당	- 2011. 1. 1. 이전 입사자. <u>단 1996년 이전 퇴사자는 배제.</u> - 1년 이상, 반도체·LCD 생산공정, 생산설비 관련 업무 담당 (협력업체) -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업무를, '상주'협	- 현대·LG 합병 시기(1999. 10.) 이후 근무력이 확인된 자 - 1년 이상, 생산직 근무 (협력업체) -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업무를, 하이닉스

		삼성전자		SK하이닉스 ¹⁾
		조정권고안	삼성전자의 입장 ²⁾	
			력사 소속으로 삼성반도체·LCD 사업 장 내에서 '상시'수행	사업장내 상주하며 근무.
발병 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중 또는 퇴직후 10년 이내 발병. - 단, ①백혈병, 림프종, 다발성골수종, 유방암, 뇌종양은 퇴직 후 14년 ②유산·불임은 퇴직 후 1년 ③희귀질환은 퇴직 후 5년이내 발병 - 2세질환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 1년 이내 출생한 자녀로 성년 이전에 발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중 또는 퇴직후 10년 이내 발병 - (예외없음) - 2세질환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 1년 이내 출생한 자녀로 성년 이전에 발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 중 또는 퇴직후 10년 이내 발병 - 자연유산 등 생식질환은 재직중 발병 - 2세질환은 임신 3개월전부터 출생 사이에 근무력이 있고 성년 이전에 발병 	
보상 내용	(1·2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비 +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% + 공익법인이 정하는 위로금 - 유족보상(사망시)은 1군은 평균임금 1000일분, 2군은 평균임금 700일분 (3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비 - 유족보상(사망시)은 평균임금 300일분 	(1·2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비 +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% + 회사가 정하는 위로금 - 유족보상(사망시)은 1군은 평균임금 1000일분, 2군은 평균임금 700일분 (3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비 - 유족보상(사망시)은 평균임금 350일분 	(보상지원 질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재사망유족보상일시금(2015년 생산직 10년 근무 평균임금 기준)을 최대한도로 근속기일, 직무형태, 발병연령, 피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여 '필요에 기반을 둔' 지원 (복지지원 질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비 	
보상 절차	- 공익법인이 심의·산정·지급	- 회사가 직접 지명·구성한 보상위원회가 심의·확정 하면, 회사가 지급 - <u>보상신청 기한은 2015. 12. 31. 까지</u>	- 노사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·산정하면, 회사가 지급	

		삼성전자		SK하이닉스1)
		조정권고안	삼성전자의 입장2)	
향후 조정		-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조정권고안 내용을 '최저' 기준으로 하여 공익법인이 정한다.	(언급없음)	- 질병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계속하여, 노사협의를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.
예방대책		<p>(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의 강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삼성전자가 제안한 내용을 원안 대로 충실히 실행하라 <p>(공익법인의 옴부즈만 시스템)</p> <p>공익법인이 선정한 3인의 옴부즈만이 다음 사업 수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합진단 실시 - 매년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조사 <p>(기타 예방대책 사업)</p> <p>공익법인이 다음 사업 수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방대책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 - 안전보건에 관한 입법개선, 해외사례 조사 등 각종 조사·연구 -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그 시행을 위한 제반 활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가 진단 팀을 구성하여 종합진단 실시 - 내부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. <p>* '2015. 8. 3. 삼성전자 보도자료' 참조</p>	<p>검증위원회가 제안한 127개의 개선안을 회사가 수용</p> <p>(개선안의 주요내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학물질 관리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- 영업비밀 축소 및 검정 정책 수립 - 직무노출 매트릭스 구축 - 질병감시체계를 통한 코호트 구축 - 여성노동자 건강관리 체계 마련 - 협력업체 보건관리 강화 -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및 참여권 강화 - 교대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- 위 내용 중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'사내 규범' 형태로 작성하여 추진 - 검증위의 제안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, 그 결과를 최고경영진이 참여한 자문회의 통해 전달

	삼성전자		SK하이닉스 ¹⁾
	조정권고안	삼성전자의 입장 ²⁾	
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하라 - 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고통을 연장시킨 것에 대해 피해가족에게 사과하라 - 기자회견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낭독하고,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과문을 보 상합의를 한 피해자에게 개별 발송 중 	(내용 없음)

1) 2015. 11. 25. 발표된 ‘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보고서’ 참조

2) 2015. 9. 18. 삼성전자 블로그(samsungtomorrow.com)의 ‘알려드립니다, 이슈와 팩트’에 올라온 공지글 및 삼성전자가 보상 신청 접수를 위해 개설한 별도 홈페이지(healthytomorrow.co.kr)의 내용

3) 2015. 8. 반올림 교섭단에 속하던 일부 피해가족들이 "반올림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"며 독자적으로 만든 모임.

4) <‘또 하나의 비극’ 하이닉스> 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648686.html

5) 산업보건전문가 5인, 시민단체 관계자 1인, 법률전문가 1인